

- 제 3 부 -

신문보도와 시민의 권익

발표자 : 김동철 (이화여대 교수)

1.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언론의 자유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 하는 것은 서구사회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었으며 또 민중이 알아야 할 권리와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신문윤리조항은 자유의 장 제 1 항에서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 민중이 알아야 할 권리에 끝까지 부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기에 취재의 자유 · 보도의 자유 · 평론의 자유 · 전달의 자유 · 취재원 비닉의 자유 등의 실질적 자유가 보장됨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자유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자유가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데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자유나 권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사상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무제한 침해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며, 또 타인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제한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두된다.

우리나라 제 5 공화국 헌법의 제 20 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긍정하고 있고, 제 16 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헌법 제 35 조 제 2 항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한계도 또한 제시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언론자유에 대하여 개별유보사항을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언론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특히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 반대법익의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론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하자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필요한 형사적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해 언론자유를 한계를 명백히 그어 놓은 것은 같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으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언론에 대해 제 3 자 효력을 갖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에 대해 이와 같이 법적 통제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절대적 기본권이라기보다 국민이 향유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중의 하나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국가적·사회적 및 개인적 법익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언론 자유와 알 권리가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과 상충될 때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익교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토마스 에머슨(Thomas I. Emerson)도 표현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표현의 자유란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또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공공의 질서나 정의 평등 도덕적 발전 등과 같은 다른 가치 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언론자유에 제한에는 첫째, 국가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둘째, 사회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그리고 셋째, 개인적 법익과의 형량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각 국가는 언론매체에 관해 여러 가지 통제를 형법 또는 민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즉 ① 국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통제로서 군사기밀보호법 · 국가보안법 · 보안업무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② 사회견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통제로서 음란물 단속 · 공공안녕질서에 관한 법률 · 광고나 매체기업의 독점집중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고, ③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통제로서 저작권침해 · 명예훼손 · 신용훼손 · 사생활침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 이 토론회의 주체가 되는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의 문제도 이러한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본지에서는 언론매체 중에서도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에 한정해서 그 사건보도와 시민의 명예나 권리와 관계를 중심으로 검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보호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하여는 특히 세계 제 2 차 대전 후 세계각국에서 이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48 년 UN 총회가 채택할 세계인권선언은 제 12 조에서 「인간은 누구도 그의 사생활 · 가족 · 가정 및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 명예와 신용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해서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도 수차의 개정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간의 존엄성 · 가치관 ·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점차 완벽하게 법문화되기에 이르렀고, 또 명예에 관한 권리 이른바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는 명문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제 5 공화국 헌법에서 사생활의 자유권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명예는 인격권 중에서는 가장 오래 전부터 민사상 및 형사상의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 751 조 제 1 항에서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민법 제 750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만 5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7 조 제 1 항)고 규정하는 외에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명예란 각자가 그 품성이나德行 명성·신용 등에 대해 세인으로부터 상당하게 받는
성가 또는 사회적 평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해하거나 또는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입혔다는 결과의 발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생활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는 법적 보장
내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사사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명예훼손은 민사·형사의 양법에서 규제되는데 반해 사생활의 자유권 침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사상의 불법행위일 뿐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게 되어있고(형법 제 309 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되고(형법 제 307 조 제 1 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형법 제 307 조 제 2 항). 한편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 한해 처벌하고(형법 제 308 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형법 제 311 조)되어 있다. 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있고 기타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비밀이 다시
폭로되거나 명예가 다시 손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남용해서 통제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제 310 조에서 사실공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와 제한의 한계선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거나, 공정한 논평이었거나, 악의가
없었거나, 당연히 논평할 권리가 있다든가, 그 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면책되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3. 신문보도와 명예훼손·권리 침해 사례

신문의 보도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당한 예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매우 허다하다. 그 중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를 외국의 경우와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 찾아본다.

1)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의 경우

이 사건은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공민권 운동의 자금 및 위증죄에 관련되어 심리를 받고 있던 킹목사의 변호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 기금모집의 신문 전면광고가, 아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시의 City Commissioner 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그 지위에 있던 설리반에 의해 「뉴욕타임즈」지 및 그 광고기사에 연명으로 저명한 4 명의 흑인목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명예훼손사건소송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제 1 심인 아라바마주 몽고메리시 순회재판소에서 배심원들은 「뉴욕타임즈」지 등에게 50 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판시했으며 동주의 최고재판소는 「미합중국의 수정헌법 제 1 조는 명예훼손적 증표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뉴욕타임즈」지 등은 이 판결에 불복,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판결에서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설리반)측이 가해자(뉴욕타임즈지 등)에게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공직자에 대한 기사는 비록 그것이 오보이었다해도 현실의 악의-그 서술에 잘못이 있었거나, 진위를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주장되고 또 증명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또 보도기관 쪽에 진실 증명의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전검열과 같은 사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게 되리라는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심판결 등을 뒤집어 「뉴욕타임즈」지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의 「현실적 악의」의 원리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인의 경우에도 채용되기에 이르렀는데, 1967 년의 타임지 대 힐(Hill)의 사건에 있어서 탈옥수에게 습격받은 힐가의 사건이 수년 후에 「라이프」잡지에 게재된 사건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영역에서까지 이 원칙이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또 사인이라도 공공의 관심사의 주인공이 된 경우에는 소위 공적인사(public figure)로 인정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거의 공적대상(public matter)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등, 공적 인물 · 공적 관심사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점차 확대해석되기에 이르러 자유로운 보도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경향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민사상의 명예훼손사건에 있어 보도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고,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게 되었으며, 또 형사상의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도 민사의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하고, 그 오신한 일에 대해 확실한 자료나 증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고의성이 없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언론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오보이지만 그 오보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책된다는 것은 보도기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있어 매우 유리한 판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인격권의 보호란 면에서 볼 때 오신당한 사람은 어떻게 그 피해가 구제될 것인가라는 커다란 문제를 남기게 된다.

2) 한국의 경우

가. 양정모씨에 관한 오보사건

이는 1981년 4월 4일자 어느 조간신문에 보도된 오보사건으로서, 「몬트리얼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씨가 대마초를 피우고 절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로 시작된 이 보도는 취재기자가 출입처에서 밤늦게 취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사가 작성한 조서와 가짜행세를 하던 동명이인인 범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기사화한 것으로서, 타지와와의 경쟁하에서 특종기사를 바라고 한 졸속때문에 생긴 오보이었다. 이 신문은 다음날인 5일, 같은 면, 같은 자리에 같은 단수의 크기로 『금메달 양정모 선수, 동명이인의 詐稱에 "내 이름 파는 가짜 다시는 없길"』이라는 표제를 붙여 다음과 같은 본문 기사를 보도했다.

「이름이 같은 범인의 가짜행세로 느닷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양정모 선수(28. 서울 강동구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 401동 106호)는 4일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 서울사무소에서 『나를 완벽하게 사칭한 범인때문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건국후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아마레슬링계의 정상이자 유명인사인 양선수는 『내 이름을 파는 가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인 모양이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체육계자체의 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유명체육인을 사칭하는 일이나 또 가짜를 믿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6년 몬트리얼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페더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던

양선수는 지금 조폐공사 서울사무소에서 과장대우로 일하면서 신상식코치와 함께 후진양성에 정열을 쏟고 있다……」

속보적 성격을 띤 이 기사는 4 일자의 사실기사에 뒤이어 나온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기사로서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나름대로 유추해서 전일의 기사가 오보이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이었다. 이 오보로 양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명예훼손은 비록 일시적이었다 해도 매우 컸을 것이다. 더구나 전일에는 신문보도와 함께 일부 라디오의 뉴스로도 이 기사가 방송되었으니 그 권리침해는 대단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일자의 기사에서는 4 일자의 기사가 오보였음을 밝히는 글귀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하여 「워싱턴 포스트」지의 『지미의 세계』 기사 정정보도사례는 하나의 교훈을 남겨준다. 1980년 7월 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되어 81년 4월 13일 기획기사부문 풀리처상까지 탄 여기자 자넷트 쿡크가 쓴 마약중독소년의 이야기 『지미의 세계』가 날조된 허보이었음이 드러나자, 이 신문은 옴브즈맨인 빌 그린(Bill Green)의 글을 통해, 이 날조된 기사가 실리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자기비판을 『자넷트의 세계』란 표제 밑에 5 페이지에 걸쳐 동지의 81년 4월 19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지미는 결코 실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워싱턴시를 뒤흔들었고 워터게이트사건 추적보도의 자랑스러운 명예를 지닌 워싱턴 포스트를 모독했다. 지미의 이야기는 명예를 차지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이에 대해 포스트지는 독자들에게 이 엄청난 실수를 해명해야 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 났는가? 왜? ……」

로 서두를 시작한 이 보고서기사는 종합평가 보도의 경위 반응, 허보게재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이유, 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비판 등을 자세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포스트지의 과오이었으며, 신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고 솔직하게 서술하였다. 물론 양씨에 관한 앞의 오보와 『지미의 세계』를 다룬 자넷트 쿡크기자의 허보는 그 성질면에서나 질에 있어서 같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신문이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일시적으로나마 크게 훼손했다는 점과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자기 신문의 오보 내지 허보를 정정함에 있어 그 취급 자세가 이렇게 다르다는 면에서 크게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나. 윤경화 노파 일가족 살해사건

이 사건은 1981년 8월 4일에 윤경화 노파, 가정부 및 윤씨의 양녀 등 3명이 서울 원효로소재 윤씨 자택에서 타살된 시체로 발견된 다음 윤씨의 조카며느리인 고모 여인이 그 살해 혐의자로 지목 당해 검거 기소되고 일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고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권유린과 고여인의 「범행」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관련된 인권침해문제가 매우 크게 세인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시초부터 큰 화제를 일으켰고 따라서 뉴스의 큰 집점을 이루게 되었다. 윤씨가 과부로 치부했고 자선사업에도 남다른 관심과 힘을 기울였으며 운명감정도 했고 많은 고관과 지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또 영화제작자와도 친분이 있게 지내고 있고 더우기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깊은 관심거리가 되는 등 사회면의 큰 기사재료가 되었다.

언론기관은 이 사건 조사경위에 관한 제보와 윤씨의 주변 · 사생활, 혐의자로 등장한 고여인의 가정환경과 그 주변 등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매일 보도했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중 한사람이 증거품을 빼돌렸다가 발각된 사건이 일게 되고 또 고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기사가 계속 보도된 데다가 공판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많이 엇갈리고, 결국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아직 고여인의 무죄가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면 그 책임을 수사기관이 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1심 선고까지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과신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그로 인해 입은 인권상 피해도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보도를 통해 신문 측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점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문 등의 언론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일은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비밀수사로 빚어질 수사상의 오류가능성을 줄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당국의 수사상의 맹점 등을 지적 · 비판하기도 하고 또 공판과정과 판결을 분석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관계인들에 대해 신문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해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볼 때,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나치게 소상히 때로는 앞질러 보도함으로써, 「용의자」를 「진범」으로 오인케 하는 기사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신문이 비교적 냉정하고 또 정확을 기하려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상의 허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던 신문의 노력이 엿보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할애 보도한 점, 자극적인 제목들을 많이 쓴 점, 현장사진 설명들이 고여인을 진범인 양 오인케 한 점 등과

특히 수사기관의 사후검증을 너무 소홀히 다룬 인상이 짙다는 점등은 신문이 크게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박상은양 피살사건

이 사건은 1981년 9월 발생한 여대생 박상은양의 피살사건과 관련되어 박양과 해외연수동기생이던 장모 대학생과 또 하나의 동기생인 정모 대학생이 관련되어 수사를 받아 온 사건이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장모군은 경찰에 연행되어 불법감금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크게 입었다. 장모군은 후일 석방된 후 검찰이 새로운 용의자로 정모군을 검찰 기소함에 따라 장군의 무고함이 드러난 것 같지만 이 장군과 그 가족 및 관계인들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고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도 큰 지장을 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살해된 박양도 흥미위주의 과잉보도와 저속한 표현으로 그 유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윤경화 노파 사건 때와 같이 장모군을 진범인 양 오인케 하는 과당보도로 그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분명하나, 공공의 이익이란 뜻에서 보도의 일종의 특권이 주어진 신문으로서 사회적 관심사의 대상 인물로 등장한 사람에 대한 사실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볼 때 신문은 명예훼손의 법률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과 그 가족 등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과정과 이 사건의 보도로 인해 입은 권리의 침해가 막대한 점에서 볼 때 신문은 큰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모든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윤노파 일가족 살해사건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문윤리면에서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81년 10월 28일, 이 사건보도에 관련해서 5개의 일간신문에 비공개경고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5개지 모두 장군의 이름은 물론 신문에 따라서는 그의 사진까지 크게 게재했고, 비록 그 취재원이 수사당국이었다 하더라도 아직 용의자의 위치에 있는 장군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1967.9.6)을 위반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1967년 9월 6일자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정해서 회원 각사가 준수토록 한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을 보면,

① 현행범 또는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용의자의 주소·성명·사진·직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피의자를 명확한 증거 없이 진범이라고 인정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의 현장검증에 있어 참혹한 장면은 사진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라. 물리학자 김모 교수 실종사건

이 사건은 1978년 물리학자 김모 교수가 실종된 후 40여일 만에 도봉산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김교수가 핵물리학자인 점을 근거로 해서 국제범죄조직이나 북괴에 납치되었을런지도 모른다는 점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인과의 해외도피설 등의 추측기사까지도 신문에 보도되었고, 김교수의 애정관계, 정신질환 경력 등 사생활의 비밀이 40여일간 소상하게 보도됨으로써 김교수의 가족이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더우기 약혼한 가족이 피해를 당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된다.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귀절은 모든 신문인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마. 박모 양의 사생활권리 침해사건

이 사건은 1965년 6월 지방의 모 일간지에 게재된 것으로서 당시의 인기가수 박모 양의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관련자의 제소에 의하지 않고 자체 심의한 사건이었으며, 동 윤리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프라이버시권리 침해를 다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기사는 대중의 저속한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내용의 보도로서 박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시켰고, 또 공공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없이 관심을 가진 대중에게 사생활을 부도덕한 조치로 전달했으며, 또 그 기사로 인해 그의 가족과 제 3자에게 해를 끼쳐 가정의파탄을 가져 올 수도 있게까지 한 것이었다.

4. 인권침해 보도의 유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문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한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중대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할 때에는 이를 원인별 유형과 침해된 권리별 유형으로 세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인별 유형을 분류해 보면

첫째 : 허위의 보도

둘째 : 과장보도, 왜곡보도

셋째 : 미확인으로 인한 오보

넷째 : 수사기관발표의 과신에 의한 부당보도

다섯째 : 흥미위주의 선정보도, 저속한 표현보도

여섯째 : 사생활 폭로보도

일곱째 :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봉육한 부녀자의 주소 성명과 사진 등 공개

여덟째 :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성명 등 공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침해된 권리별 유형을 분류해 보면,

첫째 : 사람이나 집단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둘째 : 프라이버시의 침해

셋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넷째 : 저작권의 침해

다섯째 : 소년법 · 가사심판법심리대상자 보호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각 유형을 검토하면서 그 유형별 인권침해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인별 유형

첫째 : 허보

이는 가장 경계할 유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조작하여 보도함으로서 이를 사실로 알고 이로써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훼손, 침해케 하는 것이다.

둘째 : 과장보도, 왜곡보도신문보도는 사실의 신속충실한 전달을 생명으로 하는데, 사실을 신속충실하게 전달함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사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려면 「사실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모와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한국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제 3 항)그런데 보도된 사실이 허위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실의 일부분만을 보도일 경우 그 보도로서는 진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독자에게 진상을 그릇 파악하게 하는 수가 많다. 또 전모를 포괄적으로 보도하기 위하여는 그 취재에 있어서도 일방적 취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기사에 나오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과장보도 · 왜곡보도라고 불리는 것도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허구 날조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사실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거나 어떤 일면적 방향에 맞는 사실만을 추려서 보도함으로서 사건의 전모를 포괄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해를 가져오는 수가 많다.

세째 : 미확인에 의한 오보

오보의 성격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간신문의 경우 신속보도를 사명으로 하고 타지와 경쟁과 마감시간을 크게 의식해서, 관련자에게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유형이다. 전술한 양정모씨에 관련된 오보사건은 이 유형에 속한다.

네째 : 수사기관발표의 과신에 의한 부당보도

취재원이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수사기관이므로 이를 과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당보도이다. 박상은양 사건의 예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198 조를 보면 「검사·사법경찰관사·기타 직무상 관련 있는 자는 비밀을 준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문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지나치게 소상히 때로는 앞질러 보도함으로써 「용의자」를 독자들에게 「진범」으로 오인케 한다든가 수사상 소홀했던 맹점을 지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신문에 보도하는 등의 사례는 자칫하면 결과적으로 무구한 죄인을 만들어내, 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일이다. 「부당보도」라 할 때, 언론기관 쪽에서는 보도의 신속성·타사와의 경쟁·취재의 시간적·물질적·체제적 한계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피한 일이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으며, 또 법률적으로 경찰발표에 의거한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는 대부분 언론기관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소위 「부당보도」란 신문측의 민사나 형사적 법적 책임의 유무 또는 별도로, 객관적 사실로 그 보도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사화할 때, 유의할 지침으로 ① 피의자가 과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② 물적 증거를 비롯하여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③ 공범자가 있는가? ④ 수사당국이 말하는 피의사실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⑤ 사건의 쟁점-즉 장차 공판단계에서의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신중한 연구와 취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충분한 음미와 치밀한 취재를 한다면 부당한 보도는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와 저속한 표현보도

흥미적 요소라는 것은 중요도라는 요소와 함께 신문의 뉴스가치를 구성하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이 대중의 취미에 영합해서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는 흔히 저속한 표현으로 그리고 종종 보도에 평론을 섞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 사생활 폭로 보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즉, 타인에게 엿보이기를 원하지 않은 사생활의 내용을 자기만이 비밀로 간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의

침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비록 명예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법률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신문윤리에 있어서도 사생활권리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봉육한 부녀자의 주소 · 성명 · 사진의 공개

이는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미성년의 장래를 고려하고 봉육한 부녀자의 사회적 입장을 고려한데서 요구되는 이론이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가사심판법 심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법(소년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성명 · 사진 · 주소 등을 보도함을 금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고 해석상 의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여덟째 :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성명공개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계없는 범죄 또는 관계인의 무고한 가족의 성명을 보도함으로서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수가 많다.

2) 침해된 권리별 유형

신문보도로써 훼손 또는 침해되는 권리 중 개인적 법익과 관련되는 권리에는 타인의 명예나 신용 · 프라이버시의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저작권, 그리고 소년법 · 가사심판법 심리대상자의 보도로 인한 피해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기에 여기서 반복을 하지 않기로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문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바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신문이 소위 신문재판으로 시민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하는 예가 많다. 어떠한 범죄혐의자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어 독자들이 확실히 범인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단정적인 기사를 쓰고 여론을 조성하여 이로써 재판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와 깊은 관련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밖에 피의자·피고인의 호칭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널리 적용되는 원칙이다. 흔히 신문은 형사사건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보도함으로써 재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죄인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는 데 반해, 후에 무죄의 판결을 받더라도 신문이 사회일반에 대해 준 죄인이라는 인식이 지워지지 않는 예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정은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비교적 높다는 점, 또 신문이 새로 입건 또는 기소된 사건은 크게 그리고 연일 보도하는 반면, 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것을 보도하지 않거나 한다 해도 매우 가볍게 보도하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신문의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도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호칭도 경칭을 씀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는 경칭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고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일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신문의 오랜 관습이 이러한 불합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5.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책

신문은 그의 사명과 기능을 달성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알 권리가 상충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신문의 보도로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될 때 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형법과 민법에 의한 구제제도, 즉 형법(예컨대 명예훼손죄의 처벌규정 등)과 민법(예컨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등)에 의해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이다.

둘째 :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의한 방법

즉, 신문윤리위원회에 피해자가 제소하거나 동위원회가 자체 심의를 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 언론기관에 대해 주의·경고를 하거나, 정정 취소 또는 사과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가 징계의 요구를 하거나 또는 소속사, 단체의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을 요구하거나 하는 자율규제를 하는 제도이다.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은 회원사 또는 단체 등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준수함이 특징이고 통제할 권한은 없으나, 신문윤리조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조항에 충실치 못하는 신문 및 신문인은 마침내 공중의 지지를 잃어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을 확인하는」 자세를 취한다. 1981년 10월에 발간된 한국신문윤리 위원회의 결정 제 20 조의 머릿말에서 근자에 이르러 「몇 해 동안 자율심의를 해오면서 느끼는 일로 우리 신문인들은 신문의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 지적하듯이 최근 신문윤리조항을 위반하는 사례는 해마다 격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대한 범죄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인권침해사례가 뒤따르게 됨은 한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째 : 신문사의 자주적 심의, 즉 신문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자주심의회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정정보정 또는 해명을 하거나 내부의 자기비판을 하여 인권침해 등의 사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또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네째 : 정정보도 청구 제도 즉 제 5 공화국 헌법과 이에 근거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을 주어,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게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은 하게 하고, 구제를 위하여 중재활동을 하고. 언론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 피해자는 법원에 출소하여 민사적 구제절차를 밟아 정정보도명령을 내리게 하는 제도이다.

이 언론중재는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1981년 3월 31일 발족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에 의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에 의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신속 적절한 구제책을 강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조치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선택적으로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에서의 정정보도신청 출소에는 언론기본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언론중재위의 중재라는 사치제도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강제성을 띄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의 입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중재위는 설립된 지 시일이 일천하여 아직 그 효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1981년 4월 29일의 업무개시로부터 동년 연말까지 8개월간 24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매체별로 보면 일간신문이 78%인 34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처리결과는 피신청매체수 44개중, 중재합의 9건, 중재불성립 12건, 취하 20건, 각하 2건이었으며 1건을 기각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짧은 기간에도 무게 있는 분쟁중재신청사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에 해당하는 9건은 합의를 보아, 신청인의 신청에 호의적인 결과를 가져 온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동안 중재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반론권을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사의 무반응 내지는 경시풍조이다. 피신청 당사자로서 언론사가 중재회의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인 신청인의 반론권을 묵살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다. 당사자로서의 언론사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위는 중재를 성립시킬 수 없고 결국 중재불성립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법원제소까지 불사하는 피해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인가는 의문이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모처럼의 이 제도의 앞날에 암영을 던져 주는 것이 된다.

6. 결론

이상 간략하게나마 일간신문을 통해 본 개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에 대해 그 사례의 몇 가지 원인별 유형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아울러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의사는 개인의 생명을 좌우하고, 법률가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직업을 갖기 때문에 높은 직업적 기술수준과 윤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언론인의 직무 또 사회·국가의 정신내용을 좌우하고 국민의 생명과安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대에는 인간의 행동과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고 대중매체가 옮겨주는 지식에 크게 좌우되며 극단의 경우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매체가 사실이라고 보도하면 그 보도에만 접한 개인에 있어서는 「사실」이 되고마는 것이며, 거꾸로 「사실인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고도의 직업적 윤리가 요구되고 사회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신문보도가 인권침해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문과 신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문인 스스로의 높은 윤리의식과 직업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인의 윤리를 문서화한 것이 바로 신문윤리강령이요 윤리실천요강이다.

신문사는 사별로 심의기구를 만들거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 사건보도과정에서 일기 쉬운 오류를 반성비판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신문이 내부적으로 옴브즈만제도를 두어 자가비판을 하게 하거나 자사 지면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방법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기하게 함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또 신문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신문윤리위원회의 기구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윤리향상과 책임있는 신문을 만드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문윤리기구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기구이어야 하며, 어떠한 입법조치를 통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 성격이자 그들의 언론철학이다. 입법조치에 의한다면 자율적인 성격이 흐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이 신문보도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당할때 그 개인은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법령으로 설치된 기구와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그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언론의 인권침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일반 독자들의 공헌도 중요하다. 독자인 대중은 신문을 늘 감시하고 그 잘못에 대해 독자투고를 하거나 적극적인 신문비평 활동을 하거나 시민조직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언론의 인권침해는 비단 신문이나 신문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일반 독자 등 이에 관련된 각계의 부단한 협력과 노력이 있음으로서 감소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신문이 대중의 신뢰를 받게 되며 우리가 바라는 밝고 밝은 신문상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보도의 자유와 인권보장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